

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수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
[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]

참조 환경(시설운영)안전팀장

제목 폐기물 적정반입 및 적정처리 준수 협조 요청

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,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로 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, 일부 재활용업체에서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처리용량의 30%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불임과 같이 「폐기물관리법」 위반에 따른 규정 준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각 사별 처분능력 및 처분용량을 준수하여 관련 법률 저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붙임 : 한강유역환경청 「폐기물관리법」 위반에 따른 규정 준수 요청 문서 사본 1부 끝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



담당 김정훈 팀장 김정훈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봉
협조자
시행 한공조 - 272 호 (2018. 7. 5) 접수
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-1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13층 / www.krema.kr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

환경부

한강유역환경청

보다 나은 정부

수신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자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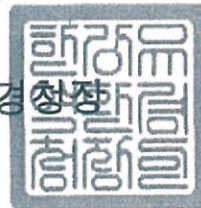
(경유)

제목 「폐기물관리법」 위반에 따른 규정 준수 요청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최근 한강청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올바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, 일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처리능력 이상 위탁받거나, 처리용량의 30% 이상 초과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,
3. 이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등을 위반하는 것임을 불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: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및 처리에 관한 규정 1부. 끝.

한강유역환경청장



주무관

손영

주무관

박지혜

과장

전결 2018. 5. 15.

유정현

협조자

시행 환경관리과-4773

(2018. 5. 15.)

접수

우 12902

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, (망월동)한강유역환경청 / http://hg.me.go.kr

전화번호 031-790-2813

팩스번호 031-790-2809

/ corps827@me.go.kr

/ 비공개(5)

폐기물처리시설 위탁 및 처리에 관한 규정

□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 초과 위탁 여부

-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,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만큼만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음
- 허가사항에 기재된 처리시간(8hr/일, 16hr/일, 24hr/일) 및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없음

법 제25조(폐기물처리업)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

3.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

☞ 50% 이상 초과 시 과태료 500만원(50% 미만 초과 시 과태료 300만원), 영업정지 1개월

□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이상 처리 여부

-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의 100분의 30이상 변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

법 제25조(폐기물처리업) ⑪ 폐기물관리법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시행규칙 제29조(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)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폐기물 중간처분업,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

마. 처분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(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)

3. 폐기물 중간재활용업,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

바.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(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)

☞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, 영업정지 1개월